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함



원산지 표시 대상자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거나 생산·가공하여 출하, 판매(통신판매 포함)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Origin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기준

국산 농산물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으로 표시

예시 고사리(국산), 고사리(충청북도), 고사리(보은군)

국산 수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

예시 고등어(국산), 고등어(연근해산)



원양산 수산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 표시

• 해역명 :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

예시 오징어(원양산), 오징어(원양산-대서양)



수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산지 “국가명” 표시(「대외무역법」에 따름)

예시 돼지고기(칠레), 낙지(중국)

2개 이상의 품목을 포장한 수산물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까지의 원산지 표시

예시 모듬해물(일본산 가리비 40%, 베트남산 주꾸미 30%, 국산 바지락 20%, 중국산 백합 10%)을 혼합한 경우

→ 모듬해물 : 가리비(일본산), 주꾸미(베트남산)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수산물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지역, 해역 등)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 표시(국산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 가능)

예시 팥(국산 40%, 중국산 30%, 미국산 20%, 태국산 10%)을 혼합한 경우 → 팥(국산 40%, 중국 30%, 미국 20%)

국내 제조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단, 물, 식품첨가물, 당류, 주정은 배합비율 순위 및 표시 대상에서 제외

[배합비율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① 1가지 원료가 98%이상 → 1순위 원료의 원산지

예시 미국산 밀가루 98%, 국산 소금 2%를 혼합하여 부침가루 제조한 경우 → 부침가루 : 밀가루(미국산)

② 2가지 원료 합이 98%이상 → 1,2순위 원료의 원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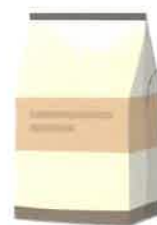
예시 국산 찹쌀가루 76%, 중국산 팥 22%, 중국산 참기름 1%, 국산 소금 1% 혼합하여 바림떡을 제조한 경우 → 바림떡 : 찹쌀가루(찹쌀 : 국산), 팥(중국산)

③ 그 외의 경우 → 1,2,3순위 원료의 원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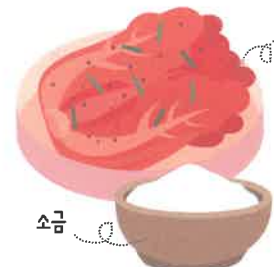
예시 호주산 밀가루 60%, 중국산 팥 22%, 중국산 동부 10%, 국산 소금 5%, 설당 5%를 혼합하여 팥빵을 제조한 경우 → 팥빵 : 밀가루(호주산), 팥(국산), 동부(중국산)

[김치류 및 절임류의 원산지 표시]

김치류	고춧가루 사용시	고춧가루, 소금 + 배합비율 2순위까지의 원료
	고춧가루 미사용시	소금 + 배합비율 2순위까지의 원료
절임류		소금 + 배합비율 2순위까지의 원료 (단,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하나가 98% 이상인 경우 그 원료와 소금의 원산지만 표시)



밀가루



김치

소금



2.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방법



포장재에 표시하는 경우

- 한글로 제품 포장지에 직접 인쇄(필요시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추가 표시)

포장 표면적	3,000cm ² 이상	50~3,000cm ² 이하	50cm ² 미만
글자크기	20포인트 이상	12포인트 이상	8포인트 이상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 풋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스티커 등으로 표시

구분	제작기준	글자크기	
풋말	가로8cmx세로5cmx높이5cm 이상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글자크기의 1/2 이상으로 하되, 최소“12포인트” 이상	
안내 표시판	진열대		가로7cmx세로5cm 이상
	판매장소		가로14cmx세로10cm 이상
스티커(상품에 부착)	가로3cmx세로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일괄 안내표시판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있는 경우 사용 불가)	가로14cm x 세로10cm 이상	“20포인트” 이상	



살아 있는 수산물의 경우

- 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에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동일 어종의 경우만 해당)하고, 풋말 또는 안내표시판 등에 글자크기 3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 표시 가능

3. 벌칙

Origin

원산지 거짓 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 5년 이내 2회 이상 위반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 :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이하)의 과징금

원산지 미표시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 미표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1/2 금액 부과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및 공표

- 대상 :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2년 이내 2회 이상 처분 받은 자
- 교육 : 교육 이수명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최대 4개월 이내 교육 이수
- 공표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 농·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등에 공표 (영업소 명칭, 주소, 위반내용 등)

